

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17년 3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년 4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기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기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3월 16일
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102

도레이케미칼(주) 공동 대표이사

이 영 관
마츠무라 마사히데
임 희 석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

유 재 훈